

제 호	
행정처분 통지서	
사업시행자 (피허가자)	
주소	(전화번호:)
행정처분 내용	
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 등의 기간	년 월 일 로부터 개월
행정처분 사유	
「항만법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함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()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직인	